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
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·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소유·경영기간 산정 시 기존 시설과 이축한 시설의 소유·경영기간을 합산토록 하고,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조정하며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,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허가 및 동일한 규모로 이축 가능한 요건, 건축물의 재축·개축·증축 및 대수선의 근거,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,

2024. 12. 31. 만료 예정인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기간을 2029. 12. 31.로 연장하여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시설이 철거되어 이축한 시설을 철거 전 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연속성 있게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보아 이축 전·후의 소유 및 경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.

제19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의 지붕 및 옥상 등을 이용하여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시설을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

별표 1 제3호저목을 삭제하고, 제5호마목에 1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) 전기자동차 충전시설	가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
----------------	---

	국도·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나)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회만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다) 부지면적은 3,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,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-	---

별표 2 제2호나목1) 및 2)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건축물을”을 “건축물(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함)을”로 하고,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3호가목2) 단서 중 “건축물”을 “건축물(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함)”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“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”을 “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립한”으로, “이주대책이 수립된”을 “이주대책, 생활대책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“철거된”을 “철거된 건축물 및 별표1 제5호다목다)②에 따라 신축하는”으로 한다.

자. 허가받아 설치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은 재축·개축 또는 대수선할 수 있으며,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증축할 수 있다.

별표 5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비고

가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과액 산정식의 건물시가표준액과 개별

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의 금액을 말한다.

나.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.

1)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: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

2)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: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

대통령령 21670호(대통령령 제26512호, 제29331호 및 제3230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시설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39년 6월 30일까지 모든 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대통령령 21670호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) 별표1 제5호마목15)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법인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
이후 2년 이내에 법인이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허가를 신청
하는 경우에는 별표1 제5호마목15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
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용도변경) ① (생략)	제18조(용도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,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,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사람 <단서 신설>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다만, <u>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시설이 철거되어 이축한 시설을 철거 전 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연속성 있게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보아 이축 전·후의 소유 및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.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
③ (생 략) 제19조(신고의 대상) 법 제12조제 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3.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③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신고의 대상) -----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<u>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의 지붕 및 옥상 등을 이용하여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시설을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</u>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45